

第102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0年7月8日(土) 11時04分

議事日程(第6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4. 崇仁 第4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 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5. 杏村地區內 都市計劃 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6.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7.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8.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9.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3.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4. 崇仁 第4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 決定(案)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面
5. 杏村地區內 都市計劃 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1面
6.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鐘路區廳長 提出) 1面
7.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2面
8.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2面
9.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2面

(11時04分 開議)

○議長 洪承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 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鐘路區廳長 提出)
4. 崇仁 第4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 決定(案)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5. 杏村地區內 都市計劃 用途地域·地區變更 決定(案)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6.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 歲出 決算承認(案)(鐘路區廳長 提出)

7.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8.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9.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11時07分)

○議長 洪承台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 飲食物쓰레기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改正 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 廢棄物管理 條例中改正 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홍제·불광천 流域 環境 行政 協議會 規約(案), 의사일정 제4항 崇仁 第4住宅 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 決定(案) 意見 聽取의 件, 의사일정 제5항 杏村地區內 都市計劃 用途地域·地區變更 決定(案) 意見 聽取의 件, 의사일정 제6항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의사일정 제7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의사일정 제8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의사일정 제9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을 일괄 上呈 하겠습니 다.

먼저 洪起瑞 運營委員長님!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 洪起瑞 運營委員會 委員長 洪起瑞 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小暑)도 지나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과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본인에게는 본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옛 그제 원구성시 적극적인 성원으로 또다시 본 위원

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지난 1년동안 본인의 부덕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시는 2000년 6월 30일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다른 집행기관과는 달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상태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과 예산집행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을 보고 드리면 2000년 6월 12일 제1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 시달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주요 집행사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 및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2000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의안처리 및 관리상태 그리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의원들이 관내·외 행사 등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예우에 대하여 각별히 조치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의회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적하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6건을 적출 개선 및 보완토록 하는 등 새로운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0년도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洪起瑞 運營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다음은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 나오셔서 안전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憲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洪承台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제3대 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도 오늘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난 1년간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준칙안을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자원화 등에 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여 가열에 의한 건조시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하고 발효 또는 발효 건조시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도록 하였고 신축하는 10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용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신설하여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토록 하고 소금성분이 많은 음식물에 대하여는 행구어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2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으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추후 우수한 감량기기 개발 시에는 이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효과적일 것이므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존치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중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바로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에 의류·신발·가방류·장판류를 추가하고 음식물류는 삭제하여 「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규정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및 규격을 세분화하여 종전 5, 10, 20, 30ℓ 4

종류에서 2, 3ℓ를 추가하여 6종류로 하고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신설하여 5, 10, 20, 30 리터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 조리문화권인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는 수분량이 많아 배출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및 매립시까지 오수 및 악취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 분리 배출시 규격봉투의 용량이 너무 크면 배출시까지 장기간 보관하게 되어 부패로 인한 악취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2, 3ℓ 등 소형봉투를 제작 공급함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북서부지역의 4개 자치구가 수질환경개선 등 지역환경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협의회의 구성은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수질 생태계 조사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하천 관할구역 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규약(안)은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4개 자치구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개선 등 지역 환경보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하천의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생활하수의 하천 유입이므로 구기·평창동의 분류하수관 미설치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분류하수관 설치를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규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행정감시권을 최대한 발휘하였으며 집행부측에서는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였으며,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겸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반은 시민행정위원 9명으로 편성하여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는 공단 사무실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국장 및 이사장 그리고 과장의 선서를 받고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류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IMF 금융지원 체제하에 어려운 국가운명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 동안의 규정업무 추진내용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별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실시 현황 및 비위공무원 적출, 처분내역의 적정성 여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반사항의 문제점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태 및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시설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착안점을 주안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31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審査報告書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市民行政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弼根 財務建設委員長! 나오셔서 안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吳弼根 財務建設委員會委員長 吳弼根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도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 제 4 주택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승인1동사무소 뒤편인 승인동 20번지 산 일대 지역으로 50년대에 무계획하게 건립된 주거지역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으

로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면적은 2만 3,962㎡ 중 택지가 2만 1,566㎡(90%)이며 도로는 604㎡(2.5%)이고, 녹지는 1,792㎡(7.5%)이며 건축계획은 아파트 6~19층 9개 동에 513세대 및 상가 1개 동으로서 건축면적이 4,837㎡이고 건축연면적이 7만 1,673㎡로 건폐율은 22.43%이며 용적률은 221.62%로 건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0일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결정 신청되어 2000년 4월 12일 심의회 개최 및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하여 2000년 4월 29일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2000년 5월 31일 관련기관 협의결과 건축계획을 일부 보완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2000년 6월 5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지역은 왕산로변의 지하철 6호선의 역세권 위치에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불량한 건축물들이 노후하고 필지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의 편에서 서서 열과 성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촌동 1번지 31호 일대 풍치지구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99년도 6월 11일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지구내 21개 필지 4,523.1㎡가 풍치지구로 남아 있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주거지역으로 하여 불이익을 해소코자 하는 조치로 주거환경지구내는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서울시 풍치지구관리 지침에 따라 이를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토지 효용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해제 면적은 행촌동 1-31번지 일대 총 21개 필지 14개 동

4,523.1㎡이고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건폐율은 40% 이하, 건물높이 4층 이하에서 건폐율은 60~70%, 용적률 400%로 변경이 되는 사안입니다. 심사와 정에서 본 지역은 '97년 7월 서울시 풍치지구관리 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의 자연풍치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왔으나 이번의 조치로써 '99년 11월 15일자로 서울시 풍치지구관리 계획에 따라 인접 행촌동 171번지 일대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에 묶여 있었던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노후불량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풍치지구 해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37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감사위원 9명이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방법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출장하여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崇仁 第4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 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杏村地區內 都市計劃 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財務建設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吳弼根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결산특별위원회 朴鍾植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特別委員長 朴鍾植 '99회계년도 세입·세출 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朴鍾植 議員입니다. 2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을 비롯한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전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99회계년도 한 해 동안의 세입은 1,601억 4,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에서 1,171억 2,300만원이 지출되어 특별회계 215억 9,900만원을 포함한 347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처리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세입영여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서는 '99년의 1,238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29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2.1%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3억 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3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176억 5,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9.5%의 증가율을 보여 재정수입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채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채납증가 요인은 IMF의 직접적 영향이 아직도 완전 해소되지

않아 많은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부도 등의 요인으로 사료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미수금 징수에 행정력 집중 및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고액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17%대에 머물고 있어 체납관리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156억 9,30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총액은 1,238억 4,100만원이며 이중 지출금액은 1,04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 1,041억 2,700만원보다 0.7%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6억 2,800만원으로 주요지출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원, 종로문화원 개보수비에 3,600만원, 북악팔각정 주변정비공사비 1억 7,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 2,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예산 전용액 9,000만원은 가로환경정비단속 일시사역인부임에 충당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048억 6,2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의 84.6%였으며, 차기이월액은 58억 1,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이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관련비 등 9억 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필운동 19-104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48억 8,3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31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6%로 이는 다음년도 세계잉여금에 편성하도록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99년도 경우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바, 이를 종합한 실제수납액 362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7.0%로서 23억 8,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66.4%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3.2% 높아졌으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중 현재 182억 6,5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바 그 체납규모가 주차장 건설관련 불용액 190억 5,900만원과 비슷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액은 33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9억 400만원이나 지출액은 122억 6,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3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장 건설 예산의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주차장건설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의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바 '99년도의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1,600만원과 융자금 회수액이 15억 700만원, 출연금이 수입이 12억 9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4,3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3억 8,900만원 등 총 합계 60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 391억 8,800만원보다 3.6% 하락한 350억 3,600만원이고 이전경비가 전년도 122억 300만원보다 5.4% 증가한 193억 2,600만원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전경비지출 및 자본지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의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정태순 대표위원을 비롯한 이선희, 김장환 세무사 두 분께서 장기간에 걸쳐 세밀한 사전 검사를 하여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절차나 착오 등을 지적하여 이미 집행부에 의견서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 審査報告書

(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洪承台 決算特別委員會 朴鍾植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洪起瑞議員!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洪起瑞議員입니다. 지난 29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행정감사시 우리 보건소 李星世 所長의 답변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방역봉사대가 연간 2회에 걸쳐서 방역을 하고 있다는 답변과 또 연막소독을 함에 있어서 연막소독이 활용성이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85년도에 '86아시아게임을 대비해서 새마을방역봉사대를 발족해서 15년 간에 걸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 방역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맨몸으로 섭씨 30°가 오르내리는 골목을 지나다보면 땀에 젖어서 걸어도 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 무거운 지게를 들쳐 메고 오로지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방역활동을 한 시간 정도만 하고 나와서 목욕을 하고 식당에 가도 냄새가 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런 설움을 받아가면서 아울러 그분들이 일당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오로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연간 2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그 사항하고 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이런 답변은 보건행정을 지고 있는 우리 李星世 所長께서 참으로 막중한 실언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과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保健所長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保健所長 李星世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의 효과는 연막소독은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살포할 수 있고 작은 입자로 분사되어서 구석진 공간까지 침투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해충을 살충할 수 있으며 또한 곧바로 분해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큰 피해는 적습니다. 그래서 근래까지도 여름철 방역사업에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 2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공청회시 연막소독의 효과는 대략 50%라고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그 동안에 실시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조건에 현저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바람이 강풍일 때도 효과가 없고 약간의 바람에 의해서 살포되기 때문에 기상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더 있는 분무소독을 집중살포하면서 또 저희가 지형조건에 따라 평창이라든가 부암동 쪽에는 숲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데 이것도 주로 일몰이나 일출 전에 기상조건에 따라 실시했던 바 점차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보건소에서는 종로지역의 지리성을 참조해서 다소 축소를 하면서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또 모기가 성충이 되기 이전에 유충작업의 형태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통계상의 수치로서 1회 소독기준을 소독약품 1ℓ를 소모했을 때 나타나는 기준상 수치로서 사실은 자율방역대에서 실시한 2회라는 소독의 통계는 주로 1ℓ 그러니까 1ℓ가 소모되는 양이 약 43회 정도를 살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상의 수치의 착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洪起瑞議員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자율방역반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쾌적하게 방역소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議長 洪承台 질의를 하신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洪起瑞議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議員 지금 李星世 所長님께서 답변을 이 연막소독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줄이고 늘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연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줘야지, 효과가 없다면 우리 지도자들은 15년간을 주민을 우롱하고 고생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연막소독을 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양단간 답변을 해주시고 2회라는 말씀은 1ℓ를 활용했을 때 43회분이다 그러면 2회라고 표현을 잘못해서 1년에 86회를 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답변하신 사항을 우물우물하게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속기록에 남는 건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洪承台 保健所長님! 나오셔서 방역에 대해서 분무방역이 있고 살충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넣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럴 때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이라 함은 그 동안에 경유와 희석하는 비율에 따라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은 부분의 숲이 많은 곳에서 효과가 있었고 또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막소독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율에 있어서는 비율이 1회에 1ℓ 그러니까 1ℓ가 43회이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1회에 43회니까 2ℓ는 그 배수겠죠. 그런 어떤 강도로서 그러니까 답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좀더 저희가 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洪承台 질의하신 洪起瑞議員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洪起瑞議員 議席에서 -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崇仁 第4住宅再開發 區域指定 및 事業計劃 決定(案)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杏村地區內 都市計劃 用途地
域·地區變更決定(案) 意見聽取의 件은 재무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
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案)은 決算特別委員長
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
會 運營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의 件
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
會 市民行政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
의 件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
會 財務建設委員會 所管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
의 件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
계공무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덕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議長이라는 막중한 직책
을 아무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
조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명하시고 존
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회의 의

원들이 갖고 있는 수레바퀴와 집행부의 수장 구청
장님이 갖고 있는 수레바퀴가 진심으로 쌍두마차
로써 잘 굴러가는지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은 가슴깊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또한 종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이 예산심의 때 철저하고 확실한
심사를 함으로써 종로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구
청에서 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2년 이상
근무한 우리 사무국 직원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
든지 진급은 못해줄망정 그 직원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힘을 모아서 사기와 용
기를 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
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
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時59分 閉會)

○出席議員 19人

洪承台	吳錦南	宣相善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崔康洵	玄壽漢	洪起瑞
金以煥	安載弘	李東奎	金正大
吳弼根	朴鍾植	劉燦鍾	

○出席關係公務員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健所長 李世世